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구미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중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대상 : 34.745km²

- 선산읍 : 5개리 1.440km²(동부, 이문, 죽장, 교리, 화조리 일부지역)
- 고아읍 : 5개리 5.068km²(이레, 오로, 봉한, 향곡, 예강리 일부지역)
- 해평면 : 7개리 8.185km²(낙성, 해평, 오상, 문량, 괴곡, 월호, 금호리 일부지역)
- 산동면 : 7개리 17.370km²(동곡, 적림, 성수, 신당, 봉산, 임천, 인덕리 일부지역)
- 장천면 : 4개리 2.682km²(상장, 하장, 묵어, 신장리 일부지역)

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조서 : 별첨

3.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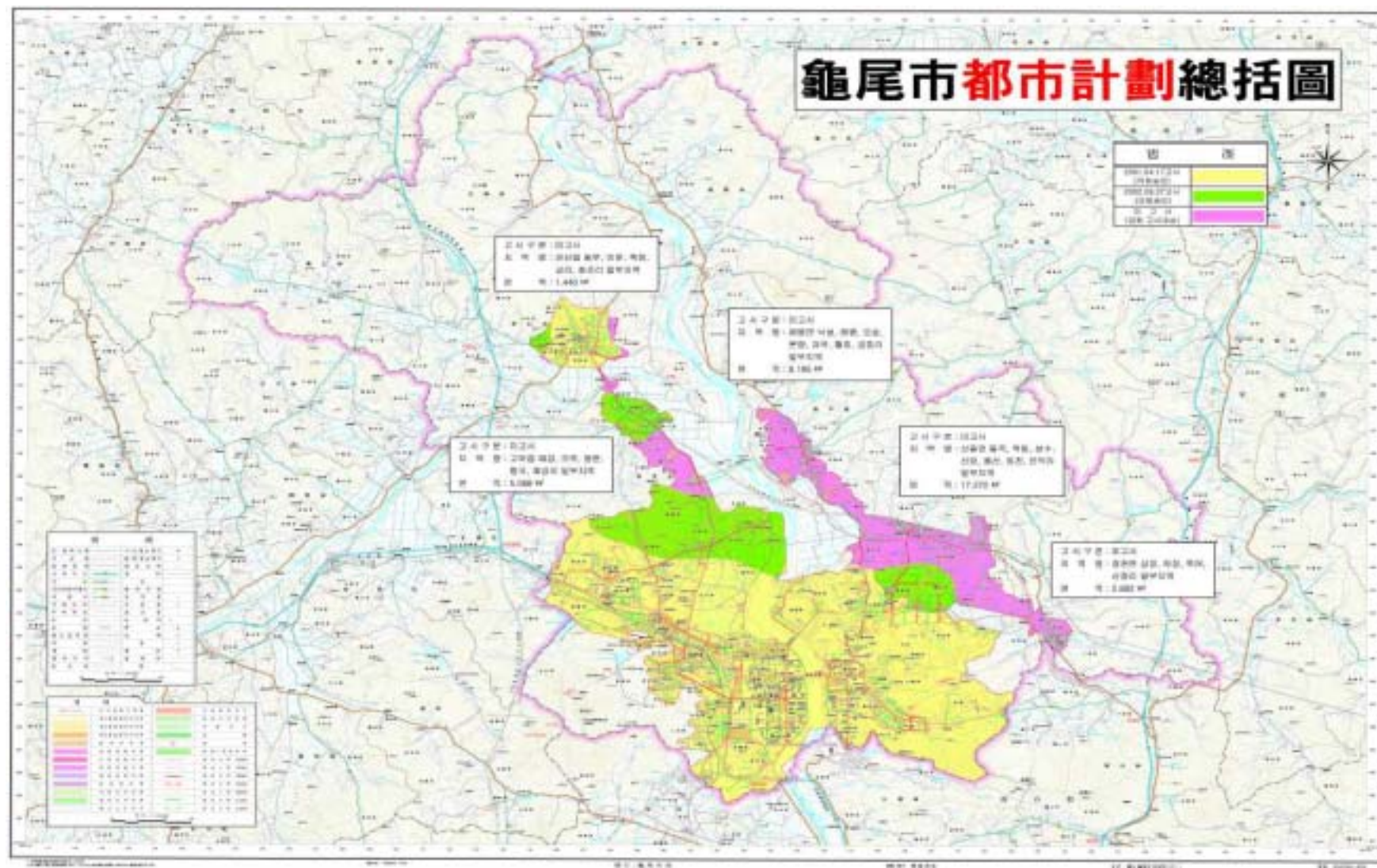
- 「지방세법」 제235조, 제23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 「구미시세조례」 제8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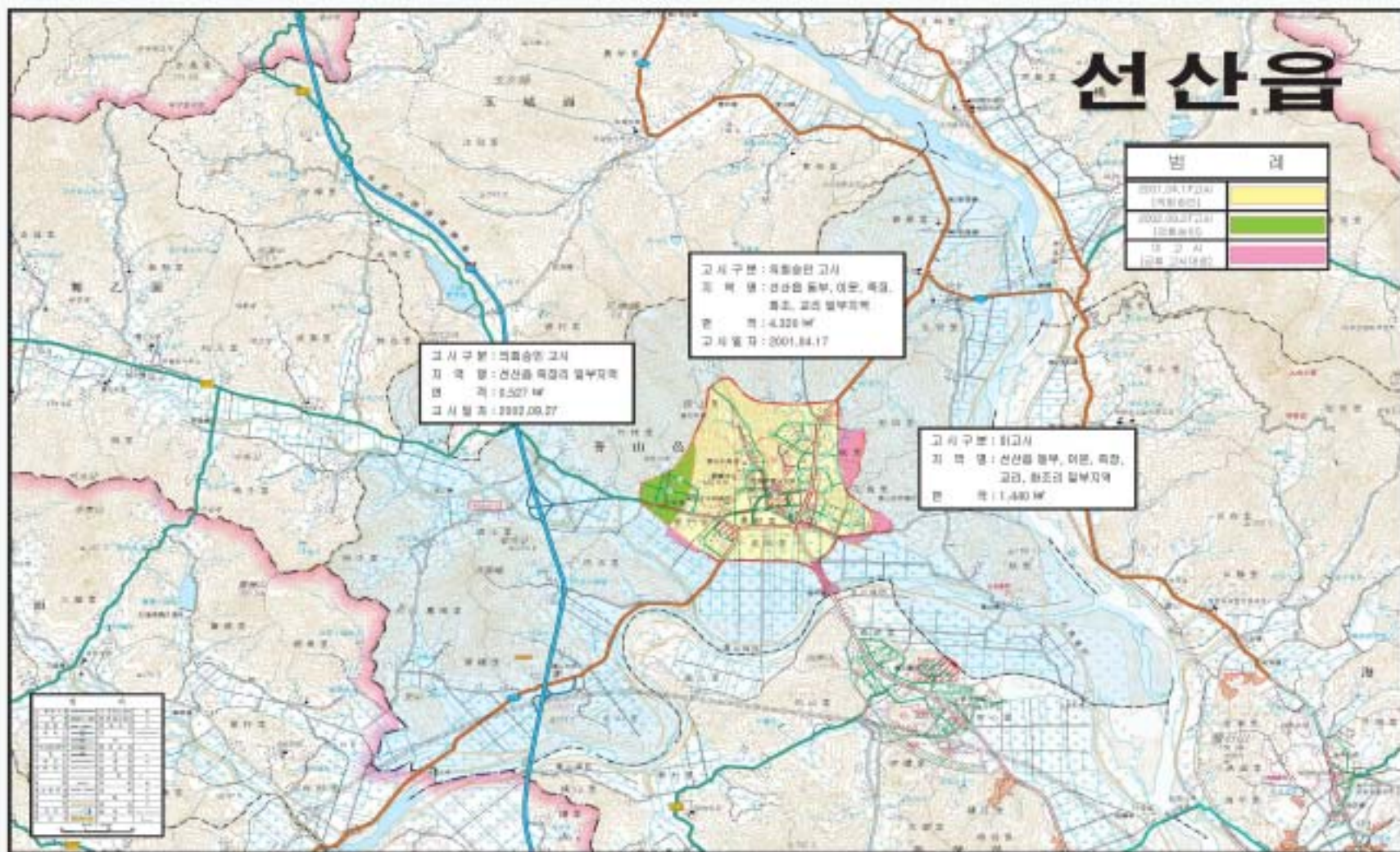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단위 : km²)

구 분	지 역 명	면 적	비 고
총 계	2읍 3면 28개리	34.745	
선 산 읍	동부, 이문, 죽장, 교리, 화조리 일부지역	1.440	불임고시도면 참 조(별첨)
고 아 읍	이레, 오로, 봉한, 향곡, 예강리 일부지역	5.068	
해 평 면	낙성, 해평, 오상, 문량, 괴곡, 월호, 금호리 일부지역	8.185	
산 동 면	동곡, 적림, 성수, 신당, 봉산, 임천, 인덕리 일부지역	17.370	
장 천 면	상장, 하장, 묵어, 신장리 일부 지역	2.682	

龜尾市都市計劃總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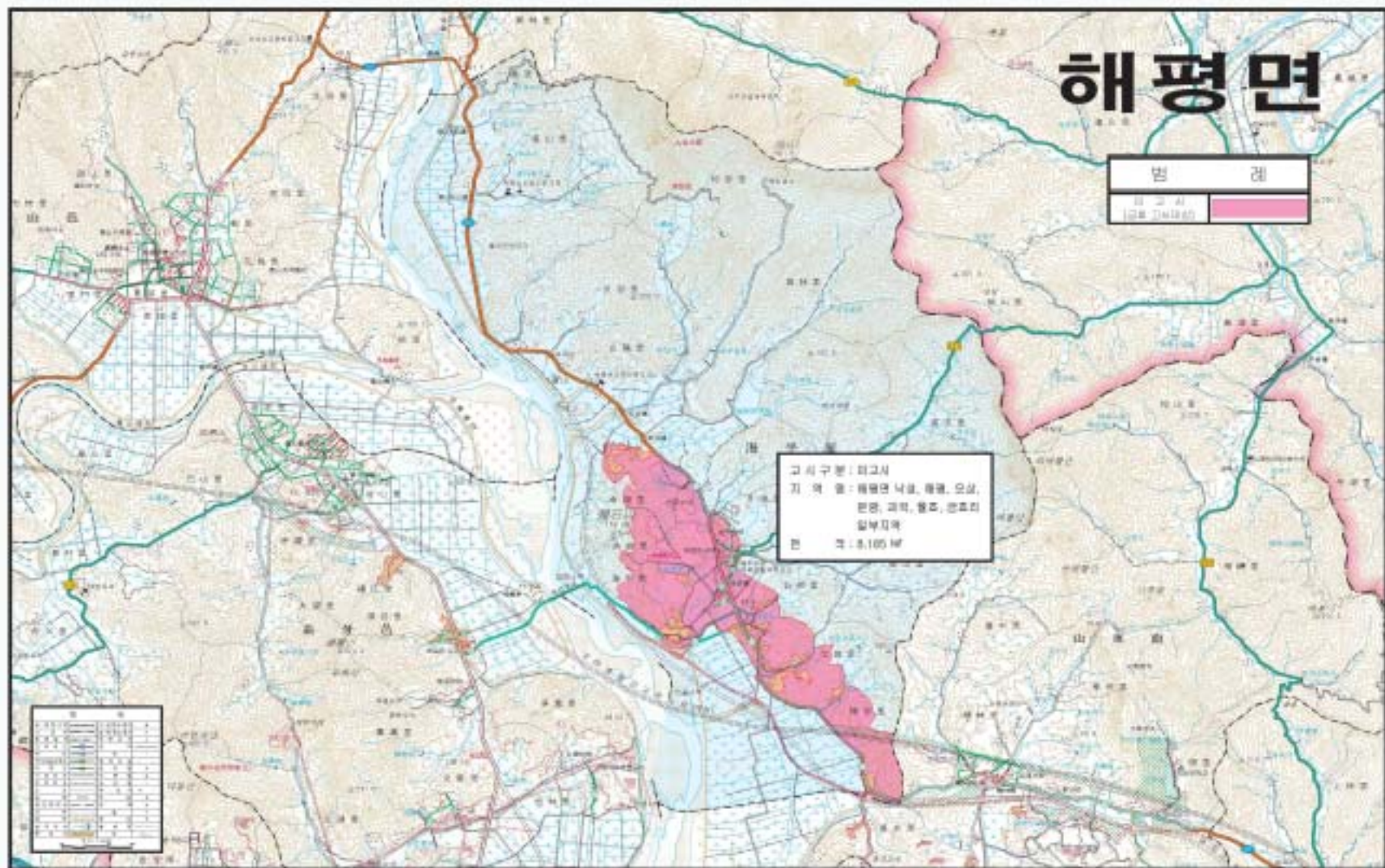
고아읍

구분	비고
2021.04.19~21일 (토요일~일요일)	
2021.05.29~31일 (토요일~일요일)	
10월 21일 (토요일~일요일)	

그 시 구 분 : 석회승탄 고시
지 역 명 : 그야동 관설, 대령, 오련,
대영, 회산리 일부지역
면 적 : 2,682㎡
그 시 별 차 : 2002.09.27

고 서 구 분 : 철교서
주 목 록 : 교학의 발달, 모론, 철학,
철리, 예종지 철학의학
문 가 : 5,888 원

고시구분 : 合題他社 고시
지명명 : 江野園 野園, 野山, 野山,
고시, 野山, 野山, 野山, 野山
지명명 : 野山, 野山, 野山, 野山, 野山
고시구분 : 2002.08.27



장천면

번	례
국 도 시	
1:100,000	

도시 구분 : 대도시
 지 역 명 : 평안원 상동, 하동, 북여,
 상동과 일부지역
 면 적 : 2,982 km²

구분	면적(km ²)	인구(명)
상동	1,200	15,000
하동	1,000	12,000
북여	782	10,000
합계	2,982	37,000

참 고 법 령

□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238조 (부과징수) ②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주택의 건축물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과세표준액에서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 구미시세조례

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